

제249회 제천시의회(임시회)

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

제1호

제천시의회사무국

2017년1월19일(목) 오전 9시30분

의사일정

- 1.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
- 2.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3.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된 안건

- 1.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의회사무국) 1
- 2.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
(주영숙 의원 대표발의, 박은영, 이성진 의원 찬성)
- 3.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
(박은영 의원 대표발의, 주영숙, 이성진 의원 찬성)

(9시31분 개의)

○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.

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.

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?

(「없습니다」 하는 위원 있음)

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<참조>

제24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(끝에 실음)

1.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의회사무국)

(9시32분)

○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

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.

박은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박은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은영 위원입니다.

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.

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1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대상사무는 예산과목별 불용액조서 등 6건이며,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질의답변으로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의정활동 국내여비 집행률 제고 및 의정활동 홍보 철저,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집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○위원장 주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.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

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 하는 위원 있음)

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2.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(주영숙 의원 대표발의, 박은영, 이성진 의원 찬성)

3.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박은영 의원 대표발의, 주영숙, 이성진 의원 찬성)

(9시34분)

○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.

본 안건에 대하여 박은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박은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은영 위원입니다.

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공단체 및 관리인에 대하여 정의하였고, 안 제9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규정을, 안 제12조에서는 검직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.

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숙박비 상한액을 지역별 물가수준에 맞춰 지급할 수 있도록 여비 지급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주요내용은 제6조에서 준용 규정의 조문내용을 정비하였고,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변경하였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참조>

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끝에 실음)

○위원장 주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.

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.

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전문위원 윤용태 운영전문위원입니다.

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.

<참조>

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(끝에 실음)

다음은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.

<참조>

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(끝에 실음)

○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.

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

답변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님이 하겠습니다.

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 하는 위원 있음)

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.

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.

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.

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 하는 위원 있음)

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.

